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602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7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공무원에게 적용될 '교육지도시간'의 사용 기간을 확대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범위를 '12개월' 범위에서 '24개월' 범위로 수정함(안 제29조제6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.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9조제6항 중 “12개월” 을 “24개월” 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15일 범위 안”을 “15일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단서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9조제6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6항(중전의 제15항) 중 “제14항”을 “제15항”으로 한다.

-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32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15일 범위 안에서</u>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</p> | <p>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-- ----- ----- <u>15</u> <u>일의 범위</u>----- -----</p> |
| <p>제14조(근무시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직무성질·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<u>범위 안에서</u>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| <p>제14조(근무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7조(병가)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<u>범위 안에서</u>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·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</p> | <p>제27조(병가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</p> |

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⑥ (생략)

⑦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범위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⑧ -----
----- 제7항 -----

-----.

